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1 발의연월일: 2025. 4.23.

발 의 자:황운하·정춘생·신장식

한창민 · 김재원 · 강경숙

백선희 · 김준형 · 서왕진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u> </u>	제17조의2(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 스체계를 체계적으로 지원·육 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 사,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